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민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56

발의연월일: 2021. 11. 5.

발 의 자: 강민정·강득구·강은미

김수흥 · 김의겸 · 민병덕

서동용・양정숙・이원욱

장철민 · 최강욱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

현재 다양한 경제적·사회적 영역에서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풍부한 생산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이 요구되고 있고,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다양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국가통계 작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통계등록 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,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민간자료 등 외부자료 융합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또한, 한국은행이 국가승인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를 원활하게 접근·이용하도록 행정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부여하고,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

있도록 하며, 통계청장이 행정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·분류·항목 등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통계등록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, 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,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제8호 및 제7조의3 신설).
- 나. 승인통계의 작성 및 통계의 시험작성에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 총재가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(안 제24조제1항).
- 다. 통계의 작성 전에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서도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이후 통계의 승인이 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자료를 즉시 파기하도록 함(안 제24조제1항제1호·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).
- 라. 통계청장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 ·분류·항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, 표준화 적 합성을 검토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식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4조의3 신설).
- 마.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

마련함(안 제31조의2 신설).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"통계등록부"란 통계의 작성 및 통계자료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한 것으로서,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속성 정보로 이루어진 모집단자료를 말한다.

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3(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)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효율적인 작성과 통계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등록부를 구축 및 운 영할 수 있다.
 -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.
 - ③ 통계등록부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4조제1항 중 "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"을 "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

-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 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
 - 2.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통계를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경우
 - ⑤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받은 행정자료를 즉시 파기하여야하며, 행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파기 여부의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
- 2.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24조의3(행정자료의 표준화)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의 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·분류·항목 등에 대하여 표준화를 추진할 수있다.
 - 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·분류·항목 등이 통계의 작성에 적합하게 표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서식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제4장제2절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1조의2(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 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(이하 "데이터센터"라 한다)를 설 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통계등록부 등 통계의 작성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다.
 - ③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에서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, 제2항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④ 그 밖에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"통계등록부"란 통계의 작성
	및 통계자료의 활용을 지원하
	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한 것
	으로서, 개인이나 법인 또는
	단체 등에 대한 속성 정보로
	이루어진 모집단자료를 말한
	<u>다.</u>
<u><신 설></u>	제7조의3(통계등록부의 구축 및
	운영)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
	효율적인 작성과 통계자료 이
	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등
	록부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
	통계등록부의 구축 및 운영을
	위하여 통계자료와 행정자료
	등을 활용할 수 있다.
	③ 통계등록부의 구축・운영에
	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및
	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제24조(행정자료의 제공) ① 중앙 제24조(행정자료의 제공) 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관의 장에게 행정자료의 제공 을 요청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 <신 설>

령으로 정한다.

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 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- 1.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 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 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
- 2.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 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통계를 시험적 으로 작성하는 경우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부터 행정자료를 제공받은 중 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 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제공받은 행정자 료를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, 행 정자료 제공기관의 장은 파기 여부의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<u>⑤</u>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1.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

 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가

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
- 2. 제19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취소된 경우
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24조의3(행정자료의 표준화) ① 통계청장은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의 작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・분류・항목 등에 대하여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.

② 통계청장은 행정자료에 포함된 용어·분류·항목 등이 통계의 작성에 적합하게 표준화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서식을 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제31조의2(통계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과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통계의작성 및 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센터(이하 "데이터센터"라 한다)를 설치 및 운

영할 수 있다.

- ②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통계등록부 등 통계의 작성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- ③ 통계청장은 데이터센터에서 통계의 작성 및 연구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고유식별정보가 암호화된 형태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하며, 제2항의 자료를 제공하는 때에는 특정의 개인 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 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.
- ④ 그 밖에 데이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